

“한의학의 미래, 의료의 미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우)0258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89 동일빌딩 6층 / 전화(02)960-0811 / 전송(02)6944-8075 / E-mail: seouloma@naver.com
사무처장: 김태준 부장: 김윤기, 윤상환 차장: 김승기 대리: 박민근 / 홈페이지: www.soma.or.kr

문서번호 서한의 제 1 호

시행일자 2023. 4. 1. (년)

경 유

수 신 분 회 장

참 조 사무국장

선 결			지 시		
접	일자	.	결		
	시간	:	재		
수	번호		·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2023회계연도 회비고지 안내

1. 관련근거 : 제70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2023. 2. 25)

제67회 대한한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2023. 3. 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회비는 중앙회비 500,000원(전액자 기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지부회비는 300,000원(전액자 기준)으로 책정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비 선납시 할인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3. 2022회계연도까지 모든 연회비 및 입회비 등을 완납한 성실납부 회원이 2023년 4월 1일부터 4월30일(1개월)까지 ‘2023년 중앙회비, 지부회비, 분회비’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상계좌를 통해 현금 납부시에는 중앙회비 및 지부회비가 10%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가 있으며, 이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1개월)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시에는 중앙회비 및 지부회비가 5%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속 회원 중 체납회비 또는 2023회계연도 회비를 분납신청(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시는 회원에게는 첨부된 【협회비 CMS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로 송부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각 분회에서는 수납된 회비 및 의무부담금을 매월 5일까지 본회로 송금하여 주시고, 신규 전입회원이 발생시에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받으시고, 본회 담당 직원과 상의 후 회비부과금액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회계연도 70세 이상 고령 회원은 195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만 반액회비 부과 대상이 적용이 됩니다.

6. 중앙회 이사회 결의(2023.2.26.)에 따라 2023회계연도부터는 온라인으로 수납된 분회비는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납액으로 송금하기로 되었으며, 각 분회에서 중앙회의무부담금을 카드로 수납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납액을 본회로 송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7. 소속 회원들에게 중앙회 정관시행세칙 제1장 1조 1항에 근거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회원구분에 따른 회비책정 1부.
2. 협회비 CMS 자동이체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의사회

